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22호

**도시관리계획(국제교류복합지구(코엑스~잠실종합운동장 일대) 지구단위계획,
한국종합무역센터 남측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
고시**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6조 제1항에 따라 주민제안된 ‘국제교류복합지구(코엑스~종합운동장 일대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(안)’과 한국종합무역센터 남측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(변경)(안)’에 대하여 2017년 제18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(2017.11.22.)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 등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8년 1월 18일
서울특별시

I. 결정(변경) 취지

코엑스 일대 광고시설물 설치 제안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, 특별가로구역 취지를 고려하여 지역 내 장소성 강화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(국제교류복합지구(코엑스~잠실종합운동장 일대) 지구단위계획, 한국종합무역센터 남측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함.

II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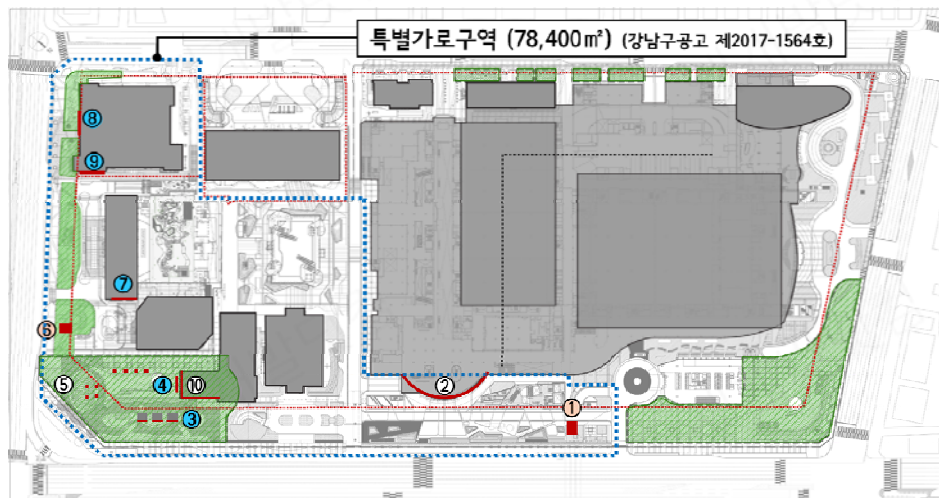
-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: 변경없음
-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: 변경없음
-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: 변경

6.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 등에 관한 완화사항' 신설 (그 외 변경없음)

6.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 등에 관한 완화사항 (신설)

1) 적용 대상

- 특별가로구역 ('17. 8. 25. 강남구 공고 제2017-1564호) 내 옥외광고물 ※ 지주형 광고물 (①, ⑥) 은 제외



2) 완화 내용

- ③ K-POP 광장 배기구 미디어 : 환기구에 부착 (공개공지 내 허용)
- ④ SM타운 입구 LED 전광판 : 필로티 상부에 설치 (공개공지 내 허용)
- ⑧ 현대백화점 정면 LED 전광판 : 건축물 벽면에 부착 (건축한계선 밖 허용)
- ⑦ 인터컨티넨탈 벽면 L/B : 10층 이상의 건축물 벽면에 부착
- ⑨ 현대백화점 동측 LED 전광판 : 10층 이상의 건축물 벽면에 부착

3)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

- 공개공지 및 전면공지 내 옥외광고물 설치 면적은 용적률 완화(인센티브) 면적 산정시 제외

4) 설치 지침 (유의사항)

가) 설치 위치

- 차량 및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할 것을 권장
- 옥외광고물 인근의 공공보행통로 및 공개 · 전면공지와의 유기적 기능연계를 고려하여 설치

나) 설치 형태

- 옥외광고물의 부속 기자재 등은 주변 가로와 유사한 색채와 재료를 사용하여 가로 전체의 통일감 구현
- 미디어 형태는 건축물의 입면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입면과 일체감 유도

④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: 변경없음

III. 관계도면 : 붙임 참조

(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)

- ※ 첨부된 지형도면 등(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)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IV. 열람장소 : 서울특별시 동남권계획반(☎02-2213-8229), 강남구 도시계획과(☎02-3423-6112)에 관계도서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.

- 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(<http://luris.mlt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입니다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23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, 철도, 공원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(도로, 철도, 공원)을 변경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